

팀장	심의관	비고

백선희 의원 귀하

군무원 신분: 해외 사례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정치 행정 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심성은, 김도희, 박명희
Tel.6788-4529/Fax.6788-4559
E-mail: shimsungeun@assembly.go.kr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본 조사회답서는 국회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오직 의정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군무원 신분: 해외 사례

(회답일 2025. 12. 1.)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법령과 국방부 등 정부와 연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회답함

■ 주요내용

- 미국
 - 한국의 군무원에 가까운 개념으로 미국 전쟁부(Department of War) 소속 민간공무원(civilian employees, 이하 '군무원')이 있는데, 이들의 신분은 행정부 소속의 연방공무원이다.
 - 일반적으로 연방공무원으로서 군무원에 대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되지만, 단체행동권(파업권)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2025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관련 부처 공무원 대부분에 대해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8월 28일에는 발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추가 발표하였다.
 - 미국에는 군무원만을 위한 별도의 복지기본법이 없다. 대신, 기본적으로 연방공무원의 복지제도를 복지제도가 적용되고, 이와 더불어 전쟁부나 각 군이 군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별도의 복지제도의 혜택도 있다.
 - 미국은 원칙적으로 군무원을 전투병(combatant)으로 운용하지 않으나, 유사한 형태로 전쟁터나 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직접적인 전투 대신 전투·작전 지원이나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Expeditionary Civilian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다.
- 프랑스
 - 프랑스 군무원은 신분은 공무원(Fonctionnaire), 계약직(Agent sous contrat en CDD ou CDI), 국가 소속 숙련공 또는 기능직(Ouvrier de l'État)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군무원은 공무원 신분이다.
 - 공무원 신분의 군무원은 「공무원법전」 제L.113-1조에 따라 단결권(Droit syndical)을, 동법 제L.221-1에 따라 단체교섭권(Droit de négociation collective)을, 그리고 동법 제L.114-1조에 따라 단체행동권(Droit de grève)을 보장받는다. 다만, 민간 기업 근로자와 같이 고용주와 자유로운 단체협약(conventions collectives)을 체결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직과 국가 소속 숙련공/기능직인 군무원은 민간인이므로 노동3권을 보장받는다.

다.

- 「공무원법전」과 「사회보장법전(Code de la sécurité sociale)」에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복지기본법이나 조항은 없으며, 프랑스에서 군무원의 전투 군인화는 논의된 적이 없다.

● 독일

- 연방국방부 군무원은 공무원(Beamte)과 근로자(Tarifbeschäftigte)로 구분된다.
- 중 공무원 신분의 군무원은 「기본법(Grundgesetz)」 제9조제3항과 「연방공무원법」 제117조에 따라 단결권을 인정받지만, 단체교섭권은 「연방공무원법」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보장된다. 더불어, 「기본법」과 「연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군무원 등 공무원은 파업이 금지된다. 근로자 신분의 군무원은 민간인 신분이므로 파업권을 노동3권을 보장받는다.
-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복지기본법이나 조항은 없으며, 독일 정부에서 군무원의 전투 군인화가 논의한 적은 없다.

● 일본

- 「자위대법(自衛隊法)」제2조는 자위대원에 자위관과 자위관 이외 사무관 등 방위성 직원이 포함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특별직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 2025년 『방위백서(防衛白書)』에 따르면, 현재 방위성·자위대에 약 2만 1천 명의 사무관, 기관, 교관이 근무하고 있다.
- 동법 제64조는 자위대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목차

1. 미국	1
2. 유럽	3
3. 일본	7

1. 미국

1) 군무원의 법적 신분

- 한국의 군무원에 가까운 개념으로 미국 전쟁부(Department of War) 소속 민간공무원(civilian employees, 이하 ‘군무원’)이 있음
 - 전쟁부의 군무원들은 행정부 소속의 연방공무원(civil service)이며, 일반 공무원 인사제도를 기본틀로 하되, 국방부 특성에 맞는 일부 특별 규정을 추가로 적용 받음¹⁾
 - 미연방법전 제5편 제2101조(5 U.S.C. §2101)²⁾은 각 부처의 임명직 가운데 군 복무자(Uniformed Services)를 제외한 모든 직위를 연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군무원의 경우 미연방법전 제10편 제81장³⁾ 등 국방부 특례규정을 통해 근무수당, 해외 근무 관련 별도의 규율을 받기도 함

2) 노동3권 보장 여부

- 미국 연방공무원의 단결권이 법률상 인정되므로 군무원에 대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왔으나, 단체행동권(파업권)은 금지되고 있음
 - 미연방법전 제5편 제7102조(5 U.S.C. §7102)⁴⁾는 모든 행정부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가입·지원할 권리 또는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 권리 행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단결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미연방법전 제5편 제7116조(5 U.S.C. §7116)⁵⁾ 및 제18편 제1918조(18 U.S.C. §1918)⁶⁾ 등에 따라 연방공무원의 파업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임
- 2025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 수사, 국가안보 업무를 주 기능으로 하는 정부

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efense Primer: Department of Defense Civilian Employees, IN Focus IF11510, 2023.2.6. (최종 검색일: 2025.11.28.),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1510>>.

2) 5 U.S. Code § 2101 - Civil service; armed forces; uniformed services(최종 검색일: 2025.11.28.),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5/2101>>.

3) 10 U.S. Code Subtitle A Chapter 81 Part II - CIVILIAN EMPLOYEES(최종 검색일: 2025.11.28.),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0/subtitle-A/part-II/chapter-81>>.

4) 5 U.S. Code § 7102 - Employees' rights(최종 검색일: 2025.11.28.),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5/7102>>.

5) 5 U.S. Code § 7116 - Unfair labor practices(최종 검색일: 2025.11.28.),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5/7116>>.

6) 18 U.S. Code § 1918 - Disloyalty and asserting the right to strike against the Government(최종 검색일: 2025.11.28.),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1918>>.

관련 기관에는 일반 연방노동관계법(5 U.S.C. ch.71)⁷⁾ 및 22 U.S.C. 52 Subchapter x⁸⁾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들 국가안보 관련 부처 대부분의 공무원에 대해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행정명령⁹⁾을 발표하였음

-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 전쟁부, 재향군인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에서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사실상 교섭권을 상실한 상태인 것으로 보도되었고, 연방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위헌·위법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¹⁰⁾
- 2025년 8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Office of the Commissioner for Patents and subordinate unit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N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 Data, and Information Service, National Weather Service,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Global Media 등의 정부 기관에 노조와의 단체교섭 협약을 종료하라는 행정명령¹¹⁾에 서명하였음

3) 별도 복지기본법

- 미국에는 군무원만을 위한 별도의 복지기본법이 없으며, 기본적으로 연방공무원의 복지제도를 복지제도가 적용됨. 다만, 군무원의 경우 전쟁부나 각 군이 군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별도의 복지제도의 대상도 됨¹²⁾

4) 군무원의 전투 군인화 사례

-
- 7) 5 U.S. Code Chapter 71 Part III Subpart F - LABOR-MANAGEMENT RELATIONS(최종 검색일: 2025.11.28.),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5/part-III/subpart-F/chapter-71>>.
 - 8) 22 U.S. Code Chapter 52 Subchapter X - LABOR-MANAGEMENT RELATIONS(최종 검색일: 2025.11.28.),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2/chapter-52/subchapter-X>>.
 - 9)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s: Exclusions from Federal Labor-Management Relations Programs, 2025.3.27.(최종 검색일: 2025.11.28.),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exclusions-from-federal-labor-management-relations-programs/>>.
 - 10) Hassan Ali Kanu, Trump moves to strip unionization rights from most federal workers, *Politico*, 2025.3.28.(최종 검색일: 2025.11.28.), <<https://www.politico.com/news/2025/03/28/union-rights-federal-workers-donald-trump-00257010>>.
 - 11)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s: Further Exclusions from the Federal Labor-Management Relations Program, 2025.8.28.(최종 검색일: 2025.11.28.),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8/further-exclusions-from-the-federal-labor-management-relations-program/>>.
 - 12) DOD Civilian Careers, Benefits and Compensation, 2025.9.27.(최종 검색일: 2025.11.28.), <<https://www.dodciviliancareers.com/whyworkfordod/benefitscompensation>>.

- 미국은 원칙적으로 군무원을 전투병(combatant)으로 운용하지 않으나, 유사한 형태로 Expeditionary Civilian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¹³⁾
- 이들은 전쟁터나 분쟁지역에 파견되는 민간 지원인력으로 직접적인 전투 대신 전투·작전 지원이나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음¹⁴⁾

2. 유럽

1) 프랑스

가. 군무원의 법적 신분

- 프랑스 군무원(personnels civils de la Défense)의 법적 신분은 공무원 일반 법규 (statut général de la fonction publique)를 따름
- 군무원은 군 업무에 대하여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법적 신분과 경력 관리 체계가 구분됨. 군무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¹⁵⁾
 - 공무원(Fonctionnaire)
 - 군무원 대부분은 공개 경쟁 시험(concours)을 통해 채용되며, 공무원 일반 법규의 적용을 받음
 - 공무원 일반 법규(Statut général de la fonction publique)는 「공무원 권리와 의무 관련 1983년 7월 13일 제83-634호(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을 근간으로 함. 2025년 기준, 동 법은 「공무원법전(Code général de la fonction publique)」에 통합되어 운영됨
 - 계약직(Agent sous contrat en CDD ou CDI)
 - 특정 기간(CDD)이나 무기한(CDI)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인력임
 - 국가 소속 숙련공/기능직(Ouvrier de l'État)
 - 주로 기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며, 이들은 별도의 법령을 따름

13) David Vergun, DOD Civilians Deploy to Support Warfighters, 2019.10.8.(최종 검색일: 2025.11.28.), <<https://www.war.gov/News/News-Stories/Article/Article/1984281/dod-civilians-deploy-to-support-warfighters/>>.

14) Robert Hill, Army civilians still needed to fill expeditionary temporary-duty deployments, 2025.4.1.(최종 검색일: 2025.11.28.), <https://www.army.mil/article/284312/army_civilians_still_needed_to_fill_expeditionary_temporary_duty_deployments>.

15) Ministère des armées, *LES EFFECTIFS CIVILS DU MINISTÈRE DES ARMÉES BAISSENT EN 2021*, No. 247, Juillet 2024, p.1.

나. 노동3권 보장 여부

- 공무원 신분의 군무원은 「공무원법전」에 따라 노동3권을 보장받음
 - 참고로 공무원의 권리는 1946년 헌법 전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등도 인정됨. 다만, 공공 서비스의 연속성 측면에서 권리 행사에 법적 제한이 있음
 - 단결권(Droit syndical)
 - 군무원은 「공무원법전」 제L.113-1조에 따라 “노조를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 단결권이 보장됨
 - 단체교섭권(Droit de négociation collective)
 - 군무원은 동법 제L.221-1에 따라 임금(rémunérations)과 실질적인 구매력(pouvoir d'achat) 보전과 관련하여 정부, 지자체, 공공 병원 대표와 협상할 수 있음
 - 다만 민간 기업 근로자와 같이 고용주와 자유로운 단체협약(conventions collectives)을 체결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음. 대신 노조는 근로조건 개정 및 임금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협의(concertation) 및 협상(négociation)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의 교섭 기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단체행동권(Droit de grève)
 - 파업권은 동법 제L.114-1조에 따라 “법률의 틀 내에서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참고로 파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행정 당국에 5일 전에 파업 예고(Préavis de grève)를 제출해야 함
 - 참고로, 2019년 12월 등 공무원 파업 당시 사안에 따라 국방부 군무원도 참여함¹⁶⁾
- 계약직과 국가 소속 숙련공/기능직인 군무원은 민간인이므로 노동3권을 인정 받음

다. 별도 복지기본법

- 「공무원법전」과 「사회보장법전(Code de la sécurité sociale)」에서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복지기본법이나 조항은 찾아보기 어려움
- 군무원의 복지 제도는 공무원 후생 복지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됨
 - 「공무원법전」 제7장(보수 및 사회적 활동)은 선택적 복지제도(복지 포인트)와 각종 수당 지급, 후생 복지 시설 이용 등을 명시하고 있음

16) Force Ouvrier, Nos délégués en régions(검색일: 2025.11.26.), <<https://fodefense.fr/index.php/accueil.html?start=1240>>.

○ 「공무원연금법(Code des pensions civiles et militaires de retraite)」은 군무원의 퇴직 후 생활 보장과 재직 중 발생한 공무상 재해 보상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라. 군무원의 전투 군인화 사례

□ 프랑스는 군무원의 전투 군인화를 논의한 적 없음

□ 오히려, 2000년대 들어 군인의 행정 업무를 군무원에게 이전하는 등의 업무 분화를 통하여 군무원의 민간 공무원 역할을 강조하고자 했음

○ 2008년, 사르코지 대통령은 「국방 및 국가안보 백서(Livre Blanc sur la Défense et la Sécurité Nationale)」¹⁷⁾를 통해 국방부 대규모 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본 구조 개편은 2015년까지 계속되었음¹⁸⁾

-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군의 핵심 임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군무원과 같은 민간 인력과 군인의 역할 구분 및 전문화를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함

- 구체적으로 군인의 잦은 순환 보직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높았던 행정, 군수, 정비(Soutien) 등과 관련된 비전투 지원 임무를 숙련된 군무원에게 이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함

- 군무원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spécialiste)로 육성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기술 전문성을 확보함

- 이를 통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54,000명의 인력 감축(Suppression d'effectifs)을 목표로 함. 그 결과 군무원과 군인의 지원 역할 분리 및 전문화, 대규모 인력 감축 등의 목표가 달성되었음.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 인력이 부족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2) 독일

가. 군무원의 법적 신분

□ 연방 국방부에 근무하는 군무원은 공무원(Beamtinnen/Beamte)과 근로자(Tarifbeschäftigte)로 구분됨¹⁹⁾

17) Ministère Des Armées Et Des Anciens Combattants, Livres blancs(검색일: 2025.11.26.), <<https://www.defense.gouv.fr/dgris/politique-defense/livres-blancs>>.

18) Geneviève Gosselin-Fleury et Damien Meslot. *Rapport d'information de Mme Geneviève Gosselin-Fleury et M. Damien Meslot*. N° 1353. Assemblée Nationale, 2013.

19) Bundeswehr, Personal(검색일: 2025.11.26.), <<https://www.bundeswehr.de/de/organisation/persona>>

- 공무원 신분의 군무원은 「연방공무원법(Bundesbeamtengesetz)」에 따라 국가와 공법적인 계약을 함
- 근로자 신분의 군무원은 「공공 서비스 단체협약(Tarifvertrag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에 따라 국가와 사법적 고용 계약을 맺음

나. 노동3권 보장 여부

□ 공무원 신분의 군무원은 노동3권을 일부만 보장 받음

- 단결권
 - 「기본법(Grundgesetz)」 제9조제3항과 「연방공무원법」 제117조에 따라 공무원 신분의 군무원은 자유롭게 노동조합 등에 가입하거나 설립할 수 있음
- 단체교섭권
 - 공무원의 봉급(Besoldung)과 근무 조건은 법률로 정해짐. 따라서, 노조가 국가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는 없음. 대신, 노조는 봉급 및 제도 개정에 대한 협의 및 참여 권한을 가짐
 - 따라서 「연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됨
- 단체행동권(Streikrecht)
 - 「기본법」과 「연방공무원법」 등에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음. 그러나 「기본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공무원 관련 법은 직업공무원제도의 전통적 원칙(hergebrachte Grundsätze des Berufsbeamtentums)을 고려하여 제도화하고 발전”시켜야 함
 -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이 '직업공무원제도의 전통적 원칙'에 공무원의 파업 금지가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 2018년 현재는 교사 등의 공무원이 파업에 참여한 경우 징계가 정당하다고 확인하면서, 공무원의 파업 금지가 「기본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헌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강조함²⁰⁾

□ 반면, 근로자 신분의 군무원은 민간인 신분이므로 파업권을 노동3권을 보장 받음

다. 별도 복지기본법

□ 독일 법률에서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복지기본법이나 조항은 찾기 어려움

1).

20) BVerfG, Beschluss vom 12. Juni 2018, 2 BvR 1738/12 u. a., BVerfGE 149, p.137.

- 군무원의 복지 제도는 신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실행됨
 - 공무원 신분의 군무원에 대한 복지 제도는 「연방공무원법」, 「연방봉급법 (Bundesbesoldungsgesetz)」, 「공무원원호법(Beamtenversorgungsgesetz)」 등에 따라 정해짐
 - 근로자 신분의 군무원에 대한 복지 제도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짐
- 라. 군무원의 전투 군인화
- 독일은 군무원의 전투 군인화를 논의한 적 없음

3. 일본

1) 군무원의 법적 신분

-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군무원(軍務員)’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음
 - 다만, 방위성 소속 일반직 공무원(行政職員) 및 기술·연구직, 의료직, 시설직 등 자위관이 아닌 민간 인력이 존재함
 - 사무관은 방위성, 방위장비청 등 내부부서에서 방위행정, 자위대의 운용 및 안전보장 정책 전반에 관한 다양한 정책의 기획·입안을 담당하며, 정보본부에서 국제 정세의 수집·분석·평가를 수행하고, 전국 각지의 부대나 지방 방위국 등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함
 - 기술관(技官) 본성 및 방위장비청에서 방위시설(사령부 청사, 활주로, 화약고 등) 및 방위장비품 등 물적 기반에 관한 각종 정책의 기획·입안을 담당하며, 정보본부에서 첨단 기술 정보의 수집·분석·평가를 수행함
 - 교관은 방위대학교, 방위의과대학교, 방위연구소 등에서 안전보장에 관한 폭넓은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대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함
 - 2025년 『방위백서(防衛白書)』에 따르면, 현재 방위성·자위대에 약 2만 1천 명의 사무관, 기관, 교관이 근무하고 있음²¹⁾
 - 근거 법령: 「방위성설치법(防衛省設置法)」 제40조

「방위성설치법(防衛省設置法)」
제40조 사무관은 명을 받들어 사무에 종사한다. 2. 기관(技官)은 명을 받들어 기술에 종사한다. 3. 교관은 교육에 종사한다

21) 防衛省, 『2025 防衛白書』, p.434(최종검색일: 2025.11.25.),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25/pdf/R07040301.pdf>.

□ 사무관, 기관, 교관 등 방위성직원은 국가공무원에 해당함

-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제2조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
제2조 국가공무원의 직은 일반직과 특별직으로 나뉜다. ③특별직은 다음의 직원이 된다.(중략) 17. 방위성 직원

2) 군무원의 노동3권 보장

□ 「자위대법(自衛隊法)」제2조에 따라, 자위대원에는 자위관과 사무관 등 방위성 직원을 포함함

○ 다만, 방위대신, 방위부대신 등 정치임명에 해당하는 자, 방위성 심의회 위원, 방위성지방협력국 노무관리과 직원 등은 자위대원에서 제외함

□ 「자위대법(自衛隊法)」제64조에 따라 자위대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음

○ 근거 법령: 「자위대법(自衛隊法)」제64조

「자위대법(自衛隊法)」
제64조 대원은, 근무 조건 등에 관하여 사용자인 국가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과 협상하기 위한 조합 그 외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
2. 대원은 동맹파업, 태업 그 외의 쟁의행위를 하거나, 정부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지 않는다.
3. 누구든지 전항의 행위를 기획하거나 그 수행을 공모하고 교사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

3) 복지기본법

□ 방위성 직원의 복지와 관련한 법으로서 「방위성 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법률(防衛省の職員の給与等に関する法律)」 등이 있으나, 자위관 이외 자위대원을 위한 복지기본법은 찾아보기 어려움

○ 「방위성 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법률」은 방위성 직원의 재해보상, 퇴직금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4) 군무원의 전투군인화

□ 방위성 홈페이지 등 공개된 문건에서 자위관이 아닌 자위대원의 자위관화와 관련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움

○ 방위성의 「무기사용규정(武器使用規定)」에서는 무기사용이 자위관에 한하여 인정되는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음²²⁾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2) 防衛省, 「武器使用規定」(최종검색일: 2025.11.27.),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02/siryu/frame/dg140016.htm>.